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0
----------	-----

제출년월일 : 1997. .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파업 및 한보 부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며, 자금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개정주요내용

-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2억원이내에서 3억원이내로 증액
(안 제9조 제1항)
- 융자상환기간을 2년에서 3년이내로 연장 (안 제9조 제5항)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입법예고기간 : '97. 2. 28 ~ '97. 3. 19. (20일)
- 입법예고결과 : 이의신청없음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조례증개정조례안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2억원이내”를 “3억원이내”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2년이내”를 “3년이내”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용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용자조건) ①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u>2억원이내</u>에서 시장이 정한다.</p> <p>⑤ 용자기간은 <u>2년이내</u>로 한다.</p> <p>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p>	<p>제9조 (용자조건) ① <u>3억원이내</u></p> <p>..... ⑤ <u>3년이내</u></p> <p>.....</p>

제5편 지역경제 제2장 공업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안산시조례 제341호,
1990. 11. 24.]

개정 1993.11. 8 조례 제503호
개정 1995. 1.17 조례 제6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융자 지원되는 운전자금등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설치 및 재원)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자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응자상환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개발신탁등 수익성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응자지원한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융자대상업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에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중소기업체
2. 수출업체

제5편 지역경제 제2장 공업 안산시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조례

3.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업체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회 용자 실시전에 용자금총액, 한도액, 조건절차등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용자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 중소기업 입증자료

3. 기타 제출서류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융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제9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2% 내지 3%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 용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제3조 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이자 보전금 지급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11.8 조례 제503호>

⑥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추가융자) 시장은 낸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상환) ①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93.11.8 조례 제503호>

제5편 지역경제 제2장 공업 안산시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조례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 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상황을 매분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3.11. 8 조례 제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95. 1.17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주 生 산 품 목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자 산 총 액	백만원	총 매 출 액		백만원		
	소 재 지	주 사무소	안산시 동			번지	
		공 장	안산시	동			번지
	규 모	대 지	m^2	상 시	계	사무직	생산직
		전 평	동	m^2	종업원		
신청	신 청 금 액	백만원	자금용도				
금액	용 자 기 간	년 개월	입주일자				

사업계획(개 요)

위와 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제5편 지역경제 제2장 공업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안산시규칙 제461호]
1995. 8.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업체 심의등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2.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3. 중소기업 대표이사 2인
4. 관내 소재 금융기관의 장 1인
5. 기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또는 위촉위원중 전출, 퇴직등으로 위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자격상실로 인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편 지역경제 제2장 공업 안산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제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안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2. 융자대상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심의
3.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